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긴급안전조치 규정 》
■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921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제2211921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긴급안전조치 규정 (안 제22조의2제4항 신설 및 제38조제3항)	2

I.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제2211921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민병덕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8. 1.

다. 회 부 일 : 2025. 8.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지하개발 사업 또는 지하시설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안전 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안전조치명령에 대한 이행을 기다려서는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접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명령 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4항 신설 및 제38조제3항).

3. 검토의견

가.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긴급안전조치 규정

(안 제22조의2제4항 신설 및 제3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 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 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의 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하개발사업자에 대신하 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 용한다.</u>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 을 이행하지 <u>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 할 수 있다.</u> 이 경우 「행정대집행 법」을 준용한다.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아니하거나 그 명령의 이 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 우에는</u> ----- ----- <u>취하여야 한다.</u> ----- -----.

개정안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주변 지반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하였으나, 해당 안전 조치명령의 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이 지하개발사업자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안 제22조의2제4항 신설),¹⁾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지하시설물관리자등”이라 함)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하였으나, 해당 안전조치명령의 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그에 대신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²⁾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7.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승인기관의 장”이란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지하시설물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지하개발 사업 또는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의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과 관련된 현행법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법 제22조의2제1항3)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주변 지반에 대한 보수·보강 등
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38조제1항4)은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
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
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주변 지반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국토교통부장관
과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안전조치의 내용 및 사유
2. 안전조치의 방법
3. 안전조치의 완료기한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
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
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
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
유자(이하 “지하시설물관리자등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안전조치의 내용 및 사유
2. 안전조치의 방법
3. 안전조치의 완료기한

지하시설물관리자등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등이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하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22조의2제3항⁵⁾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시설물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38조제3항⁶⁾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54조제1항⁷⁾에서는 지하개발 사업 또는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안전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현행법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예방 긴급안전조치 등 관련 조문 정리】

구분	지하개발 사업 관련 지반침하 위험(제22조의2 관련)	지하시설물 관련 지반침하 위험(제38조)
지반침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u>지하개발 사업</u> 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u>발생</u> 하였거나 <u>발생할 우려</u> 가 있는 경우	<u>지하시설물</u> 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u>발생</u> 하였거나 <u>발생할 우려</u> 가 있는 경우
안전조치 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u>지하개발사업자</u> 에게 안전조치를 명령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u>지하시설물의 관계인</u> *에게 안전조치를 명령 *지하시설물의 관계인(영 제30조) :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안전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u>공사중지 명령</u> (전부 또는 일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u>직접 안전조치</u> (「행정대집행법」 준용)
	<u>벌칙</u>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동 규정들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안전조치명령에 따라 지하개발 사업의 시행 또는 지하시설물의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등이 실시하고,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등이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벌칙 부과를 통해 이행을 강제하거나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그런데, 사고 발생 위험이 급박한 경우에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 시설물관리자등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하고 그 이행을 기다려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개정안은 이같은 상황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지하개발 사업의 시행 또는 지하 시설물의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 시설물관리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긴급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안전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안 제22조의2제4항은 ‘안전조치명령의 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강행규정)를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재량규정)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38조제3항은 현행법⁸⁾의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문 의 처
02)6788-5591